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 핵심사업으로서, 적기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타를 면제하였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1. 동아일보는 「메가프로젝트 예타 면제 남발...89조원 ‘묻지마 투입’」 기사에서,
 -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으로 예타 면제가 의결된 사업은 10건, 총 88조8583억원으로,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묻지마’식으로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 전력망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총당 가능한 사업은 국고보조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18조원을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거 예타 면제됐다”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용 전기요금 할인 사업도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되는 한편,
 - “사업의 기본 구상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수십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면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10호 면제는 ‘공공청사’,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의 예타 면제 유형에 비해 그 요건과 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묻지마’ 예타 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먼저, 소관 부처가 사업의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가적 추진 필요성과 면제 필요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는 면제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도 이와 같이 법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국가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 특히, 각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세수 증가분을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 인프라 투자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가 생산성과 잠재성장을 제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국가 정책적 추진의 필요성이 고려되었습니다.
- 전력망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전력망은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신속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력망 지중화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 등 지중화에 필요한 소요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은 수익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불확실하여 사업자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장실패 등 국가 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의 경우는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필수요소인 전력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한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여 기반 시설 조성,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인재양성 등을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법령을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예타 면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사무관	강미자 (044-214-3310) 최현화 (hyunhwa@korea.kr) 박표민 (tablemin89@korea.kr)
	예산실 기후환경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의영 (044-214-2570) 김기문 (krrard419@korea.kr)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정희철 (044-214-2730) 안재영 (hoochoo@korea.kr)